

의안번호	제 199호
의결년월일	2000. 11. . (제 회)

#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2000. 11. 3.

瑞山市減債積立基金造成 및 運用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2001. 10. 13

총무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2001. 10. 13

나. 提出者 : 瑞山市長

다. 回附日字 : 2000. 11. 3

라. 上程日字 : 2000. 11. 3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企劃監查擔當官 : 金知榮)

### 가. 提案理由

-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면서 해마다 지방채규모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 상환함(안 제2조)
- 기금은 수익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 운영·관리함(안 제3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및 채무부담사업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함(안 제4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된 주민복지 증진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
- 이는 주민의 욕구증대와 비례하여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일정 계획년도에 채무상환원리금을 상환해가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예견됨.
- 우리시는 당해연도 지방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1.39%이고, 채무상환 비율은 8.77%임.
-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획기적인 구상이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전형적인 의지로 사료됨.
- 다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전비율의 수익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선택하여야 하며 순세계 잉여금의 적립금액 비율은 반드시 규칙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뒷받침되는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 서산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제 177 호
----------	---------

제출년월일 2000.11.7  
제 출 자 서산시장

## 제정이유

- 지방채발행사업은 미래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되면서 지방채 규모 또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 향후 일정년도에 집중되는 채무상환원리금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 감채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에 사용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 상환(안 제2조)
- 나. 기금은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 운영·관리 (안 제3조)
-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및 채무부담사업비 원리금상환에 사용 (안 제4조)

## 참고사항

-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나. 입법예고 -

#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채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특별회계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출연금은 매년 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감채적립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방채 및 채무부담 사업비 원리금 상환
2. 기타 채무의 원리금 상환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감채적립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는 서산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기금심의회는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8조(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